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차관회

의,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제고

- 2001. 2. 4.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기한을 연장
 -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지원, 역외펀드를 통한 지원 등 최근 부당내부거래 수법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철저 대비
 - * 2000. 7. 28 경제장관간담회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연장 결정
- 현행 3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조사에 국한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적용대상에 위장계열사 조사도 포함
 - 위장계열사 조사에는 주식매입자금의 출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 확인 등이 필수 불가결한데 이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
- 자료 미제출,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2.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 확대

-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대상자로 현행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외에 “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를 추가
 - 신고에 대해서는 임의적 감면사유에서 필요적 감면사유로 변경하여 면책부여의 확실성 제고

3. 자회사 제도의 효율적 운용

-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의무 종 자회사지분율 제한의 적용

을 제외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경영·지배하는 벤처지주회사가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요건 보완

- 지주회사 설립 이전에 주권상장된 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하여 자회사 지분율요건을 30%로 완화

* 협회규정상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회사가 '99. 4. 1(지주회사제도 시행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해 30% 이상 소유 가능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현물출자 방식 외에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행위제한의무 유예기간 부여

- 물적분할, 인적분할 및 분할합병 등을 통해 분사화하는 경우 행위제한의무를 유예(1년간 부채 비율제한 예외인정, 2년간 지분율제한 예외인정 등)

■ 30대 집단 소속회사가 사업연도중 주식취득 등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총 액제한규정 적용 유예기간 부여

- 주식취득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규정을 항상 위반하게 되는 문제 해소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보완

■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만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 협행 규정을 당해 상품을 가공하는 단계의 가격유지행위도 포함되도록 보완

예) 외식업 프랜차이즈사업(예: 햄버거 등)에서와 같이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가맹점이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완제품에 대해 가격고정행위를 하면 재판가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금지

5. 기타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상담과 신고대행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사제도를 도입

- 자격요건 : 공정거래법 등에 관한 자격시험 합격자

- 단, 기존의 타 전문자격인 제도와는 달리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불인정

■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송결과에 따라 다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 과징금 체납 가산금 징수와의 형평을 맞추어 과징금 환급시 가산금 지급근거 신설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남용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30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제도는 발명 등에 대해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배타적 독점권이라는 지적재산권 자체의 속성상 자칫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기술개발 촉진의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자체의 권리보장을 주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남용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국제계약상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에 대해서만 그 방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 국내거래에서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그 방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거래에서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방지를 위해 동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동 지침의 제정으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재산권자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방지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부록」(본지 76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8일자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

동 심사기준에서는, '99년까지는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매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였으나 2000년부터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심사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행위발생 및 사건조사 시점에서 실질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법상 금지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경제인프라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네트워크산업의 경

쟁촉진을 위해 필수설비 보유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공정위는 동 심사기준의 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은 「부록」(본지 81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시장구조 조사·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 시장구조집중도(시장집중도 및 경제력집중도)를 조사·공표하였다.

시장집중도는 산업집중도(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기준)와 품목시장집중도(품목분류상 8단위 기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즉 전체 산업에서 고집중도($CR_3 \geq 95$, $CR_8 \geq 75$)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 평균 CR_3 · HHI , 그리고

전체 품목시장에서 고집중도 품목의 비중과 품목시장 평균 CR_3 · HHI 역시 '81년부터 '96년 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97년, '98년에는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 수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 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CR_3 \geq 50$ 또는 $CR_8 \geq 75$)을 충족하는 품목의 비중도 '9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97년, '98년에

< 시장집중도의 변화 추이 >

		1981	1986	1991	1996	1997	1998
산업 집중도	$CR_3 \geq 75$ 산업 수 (비중, %)	146 (35.0)	182 (34.1)	145 (24.3)	113 (18.9)	113 (18.9)	136 (23.0)
	$CR_3 \geq 95$ 산업 수 (비중, %)	61 (14.6)	71 (13.3)	62 (10.4)	41 (6.9)	45 (7.5)	62 (10.5)
	평균 CR_3	62.3	58.3	52.5	46.3	46.9	50.6
	평균 HHI	2580	2380	1930	1620	1650	1920
품목시장 집중도	$CR_3 \geq 75$ 품목 수 (비율, %)	1534 (68.4)	1642 (62.9)	1861 (58.4)	1712 (53.0)	1855 (54.9)	1924 (57.9)
	$CR_3 \geq 95$ 품목 수 (비율, %)	1008 (45.0)	1051 (40.3)	1146 (36.0)	1037 (32.1)	1132 (33.5)	1148 (34.5)
	평균 CR_3	81.7	78.3	75.9	72.7	73.8	78.6
	평균 HHI	4691	4317	4007	3690	3810	3900

* CR_3 : 시장점유율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 HHI : 각 시장의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계

< 시장지배적사업자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의 비중 추이 >

	1981	1986	1991	1996	1997	1998
$CR_3 \geq 50$ 또는 $CR_8 \geq 75$ 인 품목 수(비중, %)	1551 (69.2)	1671 (64.0)	1891 (59.3)	1757 (54.4)	1888 (55.9)	1953 (58.8)
전체 품목 수	2242	2611	3187	3228	3378	3323

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집중도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시장집중도는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R₄가 80 이상인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20.7%이나 미국은 5.5%에 불과한 데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에서 평균적으로 7개의 동등한 규모의 기업이 경쟁하는 반면 미국은 14개 기업이 경쟁하는 셈이며, CR₄가 80 이상인 품목 수 비중이 우리나라는 50.0%로 압도적

으로 높은데 비해 일본은 21.7% 수준으로 우리나라 모든 품목시장에서 약 2.5개의 동등한 규모의 기업이 경쟁하는 반면, 일본은 약 4개의 기업이 경쟁하는 셈이 된다.

다음으로 일반집중도(경제력집중도)를 보면, '98년에 광공업부문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기준 47.8%, 고용기준 21.0%를 차지하였다. 광공업부문 상위 100대 기업의 비중은 '82년 이후

< 한·미간 집중도의 비교 >

CR ₄	한국(5단위 분류): 1997		미국(4단위 분류): 1992	
	산업 수	산업 수 비중(%)	산업 수	산업 수 비중(%)
0≤CR ₄ <20	67	11.2	77	16.8
20≤CR ₄ <40	170	28.4	170	37.1
40≤CR ₄ <60	147	24.6	125	27.3
60≤CR ₄ <80	90	15.1	61	13.3
CR ₄ ≥80	124	20.7	25	5.5
계	598	100	458	100
평균 CR ₄	53.4		38.9	
평균 HHI	1431		718	

< 한·일간 집중도의 비교 >

CR ₃	한국(8단위 분류): 1997		일본(6단위 분류): 1996	
	품목 수	품목 수 비중(%)	품목 수	품목 수 비중(%)
0≤CR ₃ <20	102	3.0	1	0.3
20≤CR ₃ <40	359	10.6	7	2.4
40≤CR ₃ <60	570	16.9	95	33.2
60≤CR ₃ <80	658	19.5	121	42.3
CR ₃ ≥80	1689	50.0	62	21.7
계	3378	100	286	100
평균 CR ₃	72.4*		69.8	
평균 HHI	3815*		2377	

* 출하액 100억원 이상인 품목기준(100억원 미만의 품목시장은 매우 고집중적이므로 우리의 시장집중도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성이 있어 제외)

< 100대 기업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

	1982	1989	1992	1997	1998
출하액기준(%)	46.2	37.2	39.2	39.6	47.8
고용기준(%)	22.2	18.6	18.3	17.5	21.0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9년에 최소가 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98년에는 '97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는데 이것도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 수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그동안 경제 규제개혁 등 경쟁촉진 및 독과점시장구조개선 시책의 추진에 따라 시장집중도는 '81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97년 경제위기 이후 집중도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시장구조의 집중도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개선대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매년 시장구조를 조사·공표하여 공정거래종합지식경영시스템의 기업정보(시장집중도)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조사자료의 폭넓은 이용을 도모하고, 조사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기업결합심사 등 경쟁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기존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집중도를 완화하고 경쟁이 확대되도록 하며, 기업결합에 의한 독과점의 심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한 남용행위,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한 시책도 계속 강화해 갈 계획이다.

또한 집중도 조사대상이 되는 산업분야를 확대하여 광공업뿐만 아니라 통신·방송·운송·금융 등 서비스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내 시장구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시장집중도 조사과정에서 수출입 등 해외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은행 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은행 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가계용)」, 「기업용대출약정서」, 「가계용거래약정서」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가 1996년 10월 8일 승인한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이 여신거래의 공정화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IMF체제 이후 금리변경조항, 대출부대비용조항 등 표준약관의 특정 조항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시행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민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소비자(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출 약정시 고객이 금리체계(고정금리·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토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금리변경사유와 금리인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강화토록 하며, 변제충당시 채무자가 순서를 지정하도록 규정토록 하고, 대출 관련 제비용 채무자 부담

조항을 개선토록 하였다. 둘째, 고객과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약정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보증인에 대한 통보 조항을 신설토록 하였다.

공정위는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상기 내용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청구 받아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할 예정이다.

◇ 개정 권고안의 주요 내용 ◇

■ 대출 약정시 고객이 금리체계(고정금리·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현 행	개정권고안
현행 약정서(제1조)상에 규정된 이자율·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음	금리에 대한 고객의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시 고객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 금리변경사유를 구체화하고 금리인하에 대한 근거 규정 필요

현 행	개정권고안
금리변경사유(기본약관 제3조)가 포괄적으로 규정(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되어 있음	은행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자율 변경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금리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음	은행이 금리인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금리에 반영하지 않거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반영할 수 있으므로 금리인하 요인이 발생하거나 금리인상 요인이 해소되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근거 규정이 필요

■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강화

현 행	개정권고안
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채무자의 예금이나 담보재산에 대하여 기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압류명령은 채권의 임시보전조치로서 단순한 소명자료만으로 발하여지고 기압류명령이 있다고 해서 채무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계용 기본약관(제7조제2항제1호)에서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체 유예기간 중에는 지연배상금이 적용되므로 1개월보다 장기로 할 필요가 있음



■ 변제충당시 변제의 순서를 채무자가 지정하도록 규정

현 행	개정권고안
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제12조제2항)에서 채무가 수 개로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의 순서와 방법은 은행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민법이 정하는 순서(변제의 제공이 수개의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가 지정하거나, 이 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로 변경

■ 대출관련 제비용 채무자 부담 조항 개선

현 행	개정권고안
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제4조제1항)에서 대출 실행 및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채무자·보증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은행 단독 또는 은행·고객 공동부담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비용을 세분·구체화하여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의 편의만을 고려하거나 무리한 권리행사의 남용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약정서 교부 의무화

현 행	개정권고안
약정서 형식이 대출 신청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채무자와 보증인의 서명날인만 받고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약정서는 은행, 채무자, 보증인 3자간의 계약이므로 은행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약정서 1부를 교부하도록 개선

■ 보증인에 대한 통보 조항 신설 필요

현 행	개정권고안
(신 설)	보증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은행의 가압류 사실 및 채무자의 지체 등과 같은 중요 사항은 보증인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 상환 연장시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연장요청 사실 및 보증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채무의 상환, 연장동의, 타 보증인으로의 대체 등)을 통지

전자화폐 사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최근 전자화폐가 도입되어 그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전자화폐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서 선불카드의 위조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어느 정도 IC카드형 화폐 사용자를 보호해주고 있을뿐 네트워크형 화폐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IC카드형 전자화폐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IC카드형에 대하여 공정위는 금융결제원이 심사청구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는 IC카드형 전자화폐약관인 「전자화폐 회원 및 가맹점에 관한 약관(안)」에 전자화폐의 위조·변조나 도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화폐의 전개상

황이나 전자화폐 발행자와 사용자간 거래행태를 보아가며 네트워크형 화폐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약관의 심사 및 제정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형에 대하여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물품을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일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규율을 할 수 있는데,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화폐 사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품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발행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 및 반경쟁행위에 대해 선진국의 제도 및 경험을 참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00년 8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8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개로 편입된 회사는

회사간 신규채무보증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0년 8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9개사가 신규편입되고, 14개사가 지정제 외되어 2000년 9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2000년 8월 1일 580개사에서

575개사로 순감하였다.

그리고 제일제당의 제일냉동식품(주)가 모닝
웰(주)로(7월 5일 등기), 영풍의 고려엔지니어

링(주)가 고려산업기계(주)로(8월 17일 등기)
상호변경하였다.

◆ 2000년 8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

◎ 편입 : 9개사(지분취득 1, 회사설립 8)

◎ 제외 : 14개사(지분매각 3, 친족분리 10, 기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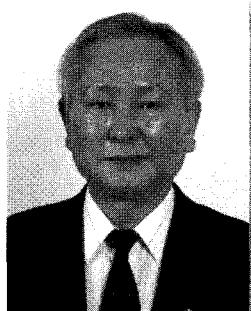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증 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현대	-	-	-	현대에너지(주)	전기업	지분매각	△11
				현대자동차(주)	자동차제조업	친족분리	
				기아자동차(주)	자동차제조업	친족분리	
				현대정공(주)	자동차부품제조업	친족분리	
				현대강판(주)	철강제조업	친족분리	
				현대카페탈(주)	여신금융업	친족분리	
				현대우주항공(주)	항공기제조업	친족분리	
				오토에버닷컴(주)	부품구매 및 신차 판매 등 전자상거래	친족분리	
				이에이치디닷컴(주)	지리정보시스템 및 차량판매, 정비 등 포털사이버몰 운영	친족분리	
				인천제철(주)	철강업	친족분리	
				(주)삼표제작소	건설기계제작	친족분리	
삼성	삼육오피스케어(주)	온라인건강상담	회사설립 (58.33%)	-	-	-	1
에스 케이	더컨텐츠컴퍼니 (주)	온라인정보제공업	회사설립 (100%)	-	-	-	1

기업 집단	편 일			제 외			증 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한솔	한솔아이홀딩스(주)	기타 금융업	회사설립(100%)	한솔엠디컴(주)	이동통신역무 제공업	지분매각(15.15%→7.84%)	0
	한솔아이글로브(주)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업	회사설립(100%)	한솔월드폰(주)	별정통신사업	한솔엠디컴(주의) 자회사	
두산	세미콘테크(주)	반도체방비제조	주식취득(0%→99%)	-	-	-	1
코오롱	(주)월드와이드넷	프로그램공급업	회사설립(100%)	-	-	-	2
	타임도메인 코리아(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사설립(100%)	-	-	-	
동양	동양투자신탁 운용(주)	투자신탁운용업	회사설립(100%)	-	-	-	1
제일 제당	한일마트(주)	식당자재 및 짐기 판매업	회사설립(100%)	-	-	-	1
새한	-	-	-	새한에이컴(주)	전자재료제조업	지분매각(25.67%→0%)	△1
계	9			14			△5

회원사 소식

신규회원사 소개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화장품(주)

대표 김두환

종로구 서린동 88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 사무처장

조학국(前 상임위원)

◆ 상임위원

박상조(前 정책국장)

◆ 사무관 전보 및 승진

정책국 총괄정책과

신봉삼(前 독점국 독점정책과)

독점국 독점정책과

임기성(前 경쟁국 유통거래과)

경쟁국 유통거래과

이동원(前 농림부)

경쟁국 단체과

배찬영(前 경쟁국 단체과 주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김규홍(前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직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보호과장

이상철(前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보호과장(직대))

◆ 해외 파견

독일 독점위원회

김재중(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 파견기간 : 2000. 10. 15 ~ 2001. 10. 14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송정원(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 파견기간 : 2000. 9. 1 ~ 2001. 8. 31

◆ 기업간전자상거래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위촉기간 : 2000. 8. 31 ~ 2002. 8. 30

오세형((주)eWeb21 대표이사)

최현만(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

이충화((주)일렉트로피아 대표이사)

전길영(ChemCross.com.Inc 아시아지사 지사장)

신한철((주)파크랜드 대표이사)

유재영((주)INNO MARKET 이사)

송태의(전자거래연구조합 이사)

박대연(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이동열(호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정경택(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희(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책임연구원)